

『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6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7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7월 8일

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해 권

나. 제안이유

-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오탈자,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임대계약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 신설

○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

-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 삭제
-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따른 인적·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조항 삭제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제3조, 「민법」 제750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명 호

○ 본 『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,

- 규제개혁추진단의 권고 사항에 따라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를 위하여, 농기계 임대계약이 취소될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,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따른 인적·물적 피해 등에 대해 사용자 본인이 책임 진다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